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

제정 2020. 11. 6 조례 제2689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고령장애인"이란 광명시(이하 "시"라 한다)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.
 - 2. "고령장애인 지원 사업"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, 경제적,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.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시장의 책무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-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 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
 - 2.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
 -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·단체·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5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1.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
 - 2.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
 - 3.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

광명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

- 4.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
- 5.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
- 6.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,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·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6조(고령장애인 지원 사업)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
 - 2.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
 - 3.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
 - 4.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
 - 5.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
 - 6.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
 - 7.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
 - 8.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 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7조(사무위탁)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.
- 제8조(중복지원 금지)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- 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 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, 의료기관,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사후관리)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

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